

◆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 - 「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2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 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-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(2005. 12. 29일 공포), 같은법 시행령(2006. 2. 8일 공포), 같은법 시행규칙(2005. 12. 31일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□ 주요골자

-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
 -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,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수정(안 제11조)
- 지방세 고액·상승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
 - 1억원 이상 고액·상승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방안이 「경기도 도세 조례」로 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의2)
-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
 - 소득세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능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함 (안 제24조)
-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
 - 과세표준은 「지방세법」과 동일한 내용으로 「양주시 시세 조례」 제2조에서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함(안 제27조)

-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 조정
 -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주택분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(안 제29조의3, 제94조)
-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및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
 -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,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(안 제37조, 제39조)
-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
 -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의 삭제로 조문내용 수정함(안 제59조)

-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
 -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, 2011년까지 단계별 세율을 인상하여 2012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부칙 규정을 신설 함(안 부칙 제2항)

【 검토결과 】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(2005. 12. 29일 공포), 같은법 시행령(2006. 2. 8일 공포), 같은법 시행규칙(2005. 12. 31일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
- 1억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경기도에 명단공개요청과 소득세할주민세 착오 납부시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신고납부가 가능도록 하고
-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주택분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-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및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담배소비세 세율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
-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과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세 시세 조례」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험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